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라온저축은행

2. 조치요구일 : 2026. 4. 16.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0건

4. 조치대상사실

※ 경영개선권고 조치 종료전 검사결과

가. 경영유의사항

가. 자산건전성 부문 경영개선계획 이행 강화

2024.12월 (경북)라온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부문의 악화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으며, 2025.1월 자본금 증자 및 부실자산 처분을 포함하는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경북)라온저축은행은 2025.1·2분기 중 부실채권의 상환, 상·매각 및 보유중인 고정자산 처분 등을 통해 2025.6말까지 자산건전성 지표 및 BIS 비율을 개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5.9월말 현재 (경북)라온저축은행은 당초 계획 대비 일부채권만 정리하였고, 신규 연체 발생 등으로 2024.9월말 대비 고정이하 분류채권의 규모는 00.0% 증가하였다.

그러함에도 2025.9월말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는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을 제외한 모든 비율이 2024.9월말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바, 이는 부실자산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개선보다는 비대면 정기예금 특판 및 단기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단기 사모사채 등으로 운영하는 등 총여신 규모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추가적인 유상증자 없이 단기 사모사채 등 신규 여신취급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의 증가로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BIS비율도 급격히 하락*하여 규제비율을 하회하였으며, 단기 유동성리스크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경기 변동에 따라 연체율의 재상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2025.11월 유상증자 실시 결과 미반영

따라서 (경북)라온저축은행은 실질적인 자산건전성 부문 개선을 위해 ① 현재까지 미정리된 채권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실채권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현황을 주기적(월별, 분기별 등)으로 관리하는 등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여 잠재부실 확대 위험을 해소하고, ② 연체채권 및 고정이하여신 발생 원인·추이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하며 ③ 외형성장보다는 자산의 안정적 성장에 중심을 두는 경영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가증권 투자업무 관리 강화

(경북)라온저축은행의 「정관」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계약, 투자유가증권 매입에 대해서 심의·의결해야 하며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표준규정인 「유가증권 투자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회사는 유가증권 투자협의회를 설치하여 유가증권 투자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국채·상장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을 투자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북)라온저축은행은 2025.9월말 현재 A사 등 5개 종목의 상장주식 및 수익증권(ELS, 펀드)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이사회 규정의 미비로 이사회 승인 없이 관련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공식적인 투자전략회의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대표이사 전결을 통해 유가증권 투자업무를 진행하였다.

또한 2025.9월말 3개의 투자일임회사와 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저축은행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자 선정·해임에 대한 절차를 내규화 하지 않아 대표이사 전결로 최근 결산기 기준 결손법인으로 자기자본이 30억원에 미달하는 투자일임회사와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 「유가증권 투자규정」에 의하면 결손법인 또는 자기자본 30억 미만의 금융투자업자를 선임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득해야 함

유가증권 투자 시 시장성, 수익성, 안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투자규모를 산정하고, 가격변동 등의 위험을 예방하여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목표로 하는 내규「유가증권 투자규정」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경북)라온저축은행은 ①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 승인 대상 유가증권 투자 규모를 명확히 하고, ② 유가증권 투자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설치·운영하고 동 협의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근거로 유가증권 투자업무를 수행하며, ③ 상호저축은행 표준규정「유가증권 투자규정」을 참고하여 금융투자업자 선임·해임 절차를 내규화 하여 ④ 국채·상장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당기순손실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동산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 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유가증권 보유가 가능하고,「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의 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신속한 부실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를 위해 저축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 초과에 대한 조치를 면제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였으나 동 비조치의견서의 유효기한(2025.12.31.)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북)라온저축은행의 부동산 등 집합투자증권(PF 정리·정상화 목적) 보유잔액은 2024년 상반기 이후 크게 증가하여 검사기준일(2025.09.30.) 현재 부동산 등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유가증권 보유잔액도 보유한도를 초과한 상황으로

2025.11.3. 유상증자로 인한 자기자본 증가액을 반영하더라도 집합투자증권 보유잔액은 한도를 초과하여 향후 비조치의견서 유효기간 만료 이후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투자한도 초과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경북)라온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 초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초과한 한도를 해소하고 향후 초과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내부감사 기능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저축은행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표준(안)」제3조 등에 따르면 상근감사위원이 없는 저축은행은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내부감사책임자는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근감사위원 또는 내부감사책임자는 임원급 이상이 결재하는 업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북)라온저축은행은 상근감사 체제에서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이후 검사기준일(2025.09.30.) 현재까지 내부감사책임자를 미선임하였고,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임원급 이상이 결재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기존의「감사직무규정」을 유지하는 등 감사 관련 내부규정의 정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북)라온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 체제에 부합하도록 내부감사책임자를 선임하여 임원급 이상이 결재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등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마. 준법감시·위험관리 조직 구성 및 독립성 확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내부통제기준」제15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의 직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고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하고,「위험관리기준」제18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위험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위험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북)라온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지원인력을 영업부 부장으로도 발령하였는데, 영업부장은 지점 수신팀, 본점 수신팀 및 여신영업팀을 모두 총괄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독립된 위치에서 준법감시지원 및 위험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경북)라온저축은행은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조직을 갖추고 담당 직원의 과도한 겸직을 해소하는 등 조직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바. 내부규정 정비 강화

(경북)라온저축은행은 「정관」에서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중요한 차입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라온저축은행은 이사회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아니하여 이사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중요한 계약 등의 기준을 내규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담당하고 있어서, 정관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조직을 개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전결규정을 종전 조직도대로 유지하거나, 인장 관련 내규가 부재하고, 표준규정의 개정에 따라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동일 내용의 규정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내부규정의 정비가 미흡하여 실제 업무 현실과 내부규정 간 괴리가 발견된다.

따라서 (경북)라온저축은행은 정관을 비롯한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중요한 계약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규정과 실제 조직 운영을 일치시키며, 인장관리규정 등의 미비한 내규를 제정하고, 표준규정의 개정에 따라 내부규정도 정비하는 등 회사의 업무가 관련 내규에 근거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내규를 일괄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사.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업무 강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보유할 수 없고, 저축은행 표준규정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3조 등에 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분기마다 공매를 실시하고 유입된지 5년이 경과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 신속하게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경북)라온저축은행은 2001년, 2005년 담보권 실행으로 유입된 비업무용 부동산을 현재까지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며, 유입 이후 공매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5년 경과 이후 매각위임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업무용부동산이 2018년 이후 업무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2024.4월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현지조치가 있기 전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식한 이후에도 공매를 실시하지 않았고, 매각위임도 검토하지 않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 관리 및 처분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경북)라온저축은행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즉시 공매를 실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위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등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및 보유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과 유동성 저하 우려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아. 자본구성 및 위험가중자산 관리

검사기준일(2025.09.30.) 현재 (경북)라온저축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전년동기 대비 oo.% 증가한 반면, BIS기준자기자본은 전년동기 대비 △oo.% 감소한 영향으로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이 전년동기 대비 △oo.%p 하락하며 규제비율(7%)을 하회하였고,

기본자본 대비 보완자본 비중도 100%로 동류평균 대비 크게 높은 상황에서 2025.11.3.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을 반영하더라도 보완자본 비중이 여전히 동류평균 대비 높은 수준으로 자본구성의 적정성도 미흡하다.

또한, 주기적인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의 추이, 변동요인을 분석하지 않고 변동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향후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경우 자본적정성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북)라온저축은행은 ①수익 안정화, 추가적인 유·무상증자 등 합리적인 자본확충 수단을 검토하고, ②기본자본 비중 확대 등 자본구성의 합리성 제고 및 위험가중자산 관리 등을 통해 BIS기준자기자본비율 하락 위험을 낮추며, ③주기적으로 자본항목 및 위험가중자산, BIS비율의 추이와 변동요인 등을 분석하고 변동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자본적정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상호저축은행 리스크관리규정(안)」제5조(리스크관리 대상)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예상치 못한 자금의 수요 및 공급에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를 포함하여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리스크가 적절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4조의6 및 내규「위기관리 업무매뉴얼」등에 의하면 위기상황 단계별 판단지표를 모니터링 하여 그 결과를 매월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기상황 판단지표 중 1개 이상 항목이 해당될 경우 해당 위기상황 판단지표의 악화 원인 및 영향 등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온저축은행은 2025.3분기 대규모의 유동성자산과 유동성부채를 동시 취급하여 2025.9말 기준 만기 3개월 이내의 예수금과 대출금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유동성비율의 변동폭이 현저히 확대되며 크게 하락하는 등 유동성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2025.9.23. 신규 신탁자금을 3개월 만기 정기예금(유동성부채)으로 조달하였고, 유동성비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2025.9월 중 만기 3개월 이내의 사모사채(유동성자산)를 신규 취급하였는데, 이 중 정기예금 취급일 이후 매입한 사모사채의 금리는 정기예금 금리 이하로 운용되는 등 자금 운용수익이 조달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유동성뿐 아니라 수익성 악화도 초래하였으며,

2025.9.26. 비대면금리특판으로 정기예금을 조달하여 2025.9말 기준 여·수신 만기 불일치가 확대되면서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유동성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유동성리스크의 적절한 분산 및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위기상황 단계별 판단지표를 모니터링 하여 그 결과를 매월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있지 않으며, 위기상황 판단지표 중 유동성비율 항목이 위기상황 판단기준에 해당되었음에도 악화 원인 등에 대한 분석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유동성리스크와 관련한 위기대응계획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라온저축은행은 ① 금리 조정 및 여·수신상품 만기 일치 등을 통해 유동성비율을 평준화하여 유동성리스크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운영하며, ② 위기

상황 판단지표를 모니터링 하여 매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위기상황 판단지표 중 1개 이상 항목이 해당될 경우 해당 위기상황 판단지표의 악화 원인 및 영향 등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위기상황 대응 보고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차. 사업계획 목표수립 및 평가체계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이사회에서 회사의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라온저축은행은 2024년, 2025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경영목표 수립 및 평가체계가 미흡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 성장에 대한 경영 목표관리가 어렵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경북)라온저축은행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사의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 성장에 대한 경영 목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